

감사 규정

개정 2025. 07.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감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감사와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는 학교법인 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전 부서 및 계열, 학과에 적용한다.

제4조 (감사의 실시)

- 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거나, 특정사무 운영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한다.
-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실시 과정에서 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 대학 규정에 근거한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의 배정, 운영, 결산에 관한 사항
- 회계 및 구매계약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진행의 제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 내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2장 감사조직 및 감사위원회

제6조 (감사부서) 감사는 사무분장에 따른 기획팀에서 주관한다.

제7조 (감사단 구성)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단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단장 및 단원은 기획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감사인은 우리 대학교 소속 교수 및 직원 중 피감사부서의 업무 및 감사 방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 착안 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실시 세부 계획을 작성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④ 제②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감사단의 권한) 감사단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4. 업무 관련 조사자료 요구
- 5. 감사 결과에 따른 관계부서 또는 관계 교직원 상벌 상신
- 6.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 7.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9조 (감사단 준수사항) 감사단은 감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감사단은 관계 규정, 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2. 감사단은 고의로 피 감사부서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을 묵과해서는 아니 된다.
- 3. 감사단은 감사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4. 감사단은 감사 수행에 있어 피 감사부서의 업무상 창의 및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 2.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 3. 감사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4. 처분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감사 계획 및 실시

제11조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단장은 감사 실시 전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감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감사의 목적
- 2. 감사 종류 및 내용

3. 감사 일정
4. 감사 대상 부서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감사 통보)

- ① 감사실시에 앞서 시기와 범위 및 준비사항을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특별감사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보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피 감사부서의 협조) 피감사부서, 계열 및 학과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은 감사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조서)

- ① 감사단은 감사 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대조 확인, 조회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감사조서로서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감사단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의 확인서에는 발견된 지적사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피감사부서의 장과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중복감사 억제) 감독청이나 법인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감사계획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제16조 (감사보고)

- ① 감사단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내용이 경미한 경우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감사목적 및 일정<개정 2025.07.28.>
 2. 피 감사부서 및 소속 직원
 3. 감사단 명단
 4. 감사 결과 내용 및 통합의견
 5. 포상, 개선권고, 주의, 경고, 시정, 징계 등의 처분<신설 2025.07.28.>
- ③ 제②항 제5호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28.>

 1. 포상 : 모범적인 업무 개선실적 또는 괄목할 만한 업무 성과를 달성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또는 감사대상부서에 대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여 행하는 제안 조치
 2. 개선권고 :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교직원을 지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징계 : 현저히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요약 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감사단장은 피감사부서의 장이 제기한 이의를 검토한 후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정요구) 감사단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피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정조치) 피감사부서는 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정조치 확인) 감사단장은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 감사단장은 감사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 감사단장은 감사 결과 현저히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징계 소관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7.28.>

제24조 (정보제공자 신분보장) 감사와 관련하여 내부 교직원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유지 및 신분을 보장받으며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25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5. 0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7. 2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